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의결사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과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에는 안전점검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85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험 및 교육·훈련’ 등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고시 근거와 대행기관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실안전관리사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은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위촉 민간위원의 잔여임기 산출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결원으로 민간위원을 신규위촉하는 경우, 신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정함(안 제5조제4항)

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을 별표 3에 따른 저위험 연구실로 규정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센터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신설)

라. 연구실안전관리사 합격자 교육·훈련의 면제대상 기준을 마련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마.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32조제2항)

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이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8)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4. 2. 8. ~ 3. 19.)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되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경우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별표 3"을 각각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은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을 말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를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대행기관은"으로 한다.

제23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내용"을 "대상, 내용"으로 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훈련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제32조제2항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 표의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1호의2 중 "연구실안전관리사"를 "연구실안전관리사(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제외받은 연구실안전관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8 제2호 표의 위반행위란 바목 중 "아닌 자로"를 "아닌 사람에게"로,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을 "정밀안전진단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4항 제9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부 칙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5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되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경우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①·② (생 략)	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

다.	--.
1. 일상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 다만,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 ---- 제3항----------.
2. 정기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	2. ----------. ----------.
가.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	가. 제3항----------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은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을 말한다.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가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⑦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대행기관은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 ⑥ (생 략)	제23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⑧ ------ 제7항----------.
제29조(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 ①·② (생 략)	제29조(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훈련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대상, 내용----------.
제32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32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② ---------- 법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
[별표 2]	[별표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제8조제3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제8조제3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1의2. <삭 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7.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별표 4]

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

(제10조제2항 관련)

1. 일상점검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물적 장비 요건
연구활동종사자	별도 장비 불필요

2.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점검 분야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물적 장비 요건
일반안전, 기계, 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7.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별표 4]

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

(제10조제2항 관련)

1. 일상점검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물적 장비 요건
연구활동종사자	별도 장비 불필요

2.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점검 분야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물적 장비 요건
일반안전, 기계, 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및 화공	1. 인간공학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과학기술분야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안전 나. 기계 다. 전기 라. 화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가. 일반기계기사 나. 전기기능장·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다.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4.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소방 및 가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가스누출검출기 가스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및 화공	1. 인간공학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제외받은 연구실안전관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과학기술분야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안전 나. 기계 다. 전기 라. 화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가. 일반기계기사 나. 전기기능장·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다.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4.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소방 및 가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가스누출검출기 가스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2. 소방 또는 가스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가스기능장·가스기사·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가스산업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산업위생 및 생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2. 산업위생,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분진측정기 소음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풍속계 조도계(밝기측정기)

비고

1. 물적 장비 중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점검 실시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별표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제14조제6항 관련)

	2. 소방 또는 가스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가스기능장·가스기사·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가스산업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산업위생 및 생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2. 산업위생,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분진측정기 소음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풍속계 조도계(밝기측정기)

비고

1. 물적 장비 중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점검 실시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별표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제14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더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뒤에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의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했던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로서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더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뒤에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의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했던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로서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

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4항 제1호	등록취소			
나.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7조 제4항 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대행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 제4항 제4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법 제13조제1항의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 제4항 제5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법 제17조 제4항 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4항 제1호	등록취소			
나.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제17조 제4항제 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대행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17조제4항 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4항 제4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법제13조제1항의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제17조 제4항제 5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법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업무를	법 제17조제4항 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대행한 경우					
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대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4항 제7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법 제17조제4항 제8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신 설>					
수행하게 한 경우					
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대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4항 제7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법 제17조제4항 제8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자.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4항 제9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연 락 처	(044) 202 - 4856